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0. 12. 22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수도요금의 평균 인상율을 하향조정하여,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공단기업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가계운영에도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 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 인상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손실을 충당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상수도요금의 평균 인상율을 당초 22.8%에서 20.2%로 하향 조정 함.

3. 수정 내용

- 조례 제29조(요금)의 【별표2】 상수도요금표를 폐지하고, 2.6%하향된 【별표2】 상수도요금표로 대체, 수정함.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수도급수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수용가 및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으로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중수"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7.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구미시의 관할 구역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 2 장 급수 공사의 비용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자가 추정금 및 과태료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의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는 공사비납부와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 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취소시에도 이를 징수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장치등의 설치 및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단서조항의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건물내 배관의 분리가 불명확 할 때

2. 급수 구역외 지역과 대지 경계를 같이하는 곳으로 수도전을 설치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

3. 수도사용에 필요한 장치를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특수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자.

⑥시장은 동일 건물내 가정용과 기타 업종간 수도전을 분리할 수 있으며, 급수전 분리 공사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승인한다.

제7조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수도 설치의 목적 및 책무) ①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에 설치·관리 및 요금 감면, 기타 제반여건을 규정하여 그 적절한 운영에 의하여 용수수급 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며, 중수도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돗물의 합리적인 이용에 노력한다.

제9조 (중수도 설치 대상등) ①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적용한다.

②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1,000석이상의 영화관 및 음식점 또는 도서관, 실내수영장, 월 50,000세제곱미터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빌딩 및 공장 등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③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중수도의 시공업자 자격, 설치신고, 관리, 사용용도, 수질기준 및 검사, 요금감면, 수량인정, 수도미터기 설치등의 범위는 시정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②급수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 및 시공에 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일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종료한 일로부터 1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⑤급수공사의 자재는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업체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제49조제2항에 의한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 구경확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용가에서 부담한다

③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진다.

④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설계수수료,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를 설계에 의한 실액제로 하고,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사재 검사수수료등을 합산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금액으로 한다.

제14조 (공사비의 납부)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하며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는 선납으로 40퍼센트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기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을 시는 2퍼센트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시 가산금은 정산에서 제외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5조 (시설 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사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대한 급수전은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전체호수에 세대당 시설분담금을 곱하여 징수하고, 전체호수에 시설분담금을 곱한 금액과 급수공사시 설치할 수도계량기의 시설분담금중 그 금액이 많은 것을 징수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설공용의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흡수정 등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등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시장이 직접 시행한 흡수정등의 장치 설치 및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준공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급 수

제20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량에 대하여는 인정부과 하여야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되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 수도사용자등의 명목이 변경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7.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가정용으로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 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소방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 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 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교체등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5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 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전용공업용수 및 제조업체는 단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저수탱크(24시간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7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들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구경별정액요금을 과징 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6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들의 6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4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 또는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상수도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이 되었을 때
6. 제44조제1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와 부도등으로 사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7. 사용료를 년 6회이상 체납한 수용가

제 4 장 요금과 수수료

제28조 (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등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소유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 (요금) ①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 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또는 업무용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사용량을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으로 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 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허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탈·부착등 필요한 제비용은 시험결과 허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 완료후 징수하거나 익월 수도사용료와 같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4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25일 또는 말일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체납요금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부에 의하여 자체관리 징수한다.

제35조 (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급수 전에 대한 구경별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기숙사 포함)의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제36조 (가압료의 징수)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받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 기타 변상금, 과태료등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수도납입고지서로 하며 타회계 공과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 납부독촉 안내문을 동시에 발부 미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타회계 공과금을 병행하여 고지할 시에는 병기하여 발행한 공과금에 대하여 일정수수료를 징수하며 그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 (일시급수 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 후 공사비 납부시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 및 철거공사비를 선납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 요금의 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급수 종료후 상·하수도요금 및 철거공사비를 정산한 후 추징 또는 환불 정산한다.

제40조 (제수수료) 시장은 【별표 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 (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혜 대상자
2.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장에게 신고한 자
3. 천재지변등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감면 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5.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6. 기타 공익상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의 범위는 감면금액등 감면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관 리

제42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이의 개수, 통합 또는 구경절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3조 (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파손 변상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년이내에 년 6회이상 체납하였던 사용자등과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일 경과 후 정수 처분할 수 있음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소화용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는 제40조의 정수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5조 (포상금의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단,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50만원 이내
3.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추정금과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납부된 시점에 지급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과, 탈·부착비를 합한 금액으로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누수량의 변상액은 영업용의 최고 효율과 누수 추정량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제47조 (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①상수도시설을 훼손한자는 지체 없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누수량은 구경별 최대출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그 2배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누수량의 요금은 영업용 최고요율을 적용한다.

제48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9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50조 (수도계량기의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등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기자본이 5,000만원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도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산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1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래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재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분담금을 징수한다.

④(과태료 및 수수료의 적용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조례 제15조 관련)

시 설 분 담 금

계량기 구경별	분 담 금 액		비 고
	동 지 역	읍 · 면	
13mm	100,000	80,000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분담금 차액을징수한다
20mm	250,000	150,000	
25mm	400,000	200,000	
32mm	800,000	500,000	
40mm	1,400,000	1,000,000	
50mm	2,400,000	1,800,000	
80mm	5,500,000	4,000,000	
100mm	10,000,000	7,000,000	
150mm	20,000,000	15,000,000	
200mm	30,000,000	20,000,000	
250mm	40,000,000	30,000,000	
300mm이상	40,000,000 × 단면적 배율(천원이하절사)	30,000,000 × 단면적 배율(천원이하절사)	
			※ 공업단지지역은 동지역 적용

[별표 2] (조례 제29조 관련)

상수도요금표

업종별사용요금 (단위 : m')

업종별	단계별	요금	비고
가정용	0 ~ 10 m ³ (1단계)	240	
	11 ~ 20 m ³ (2단계)	320	
	21 ~ 30 m ³ (3단계)	390	
	31 ~ 40 m ³ (4단계)	530	
	41 ~ 50 m ³ (5단계)	640	
	51 m ³ 이상 (6단계)	770	
업무용	0 ~ 20 m ³ (1단계)	380	
	21 ~ 50 m ³ (2단계)	430	
	51 ~ 100 m ³ (3단계)	560	
	101 ~ 300 m ³ (4단계)	650	
	301 m ³ 이상 (5단계)	800	
영업용	0 ~ 30 m ³ (1단계)	480	조례 제46조 제3항, 제47조, 제39조의 일시 급수의 경우 최고 요금 적용
	31 ~ 50 m ³ (2단계)	620	
	51 ~ 100 m ³ (3단계)	800	
	101 ~ 300 m ³ (4단계)	950	
	301 m ³ 이상 (5단계)	1,000	
욕탕용 1 종	0 ~ 200 m ³ (1단계)	400	
	201 ~ 300 m ³ (2단계)	500	
	301 ~ 500 m ³ (3단계)	650	
	501 m ³ 이상 (4단계)	900	
욕탕용 2 종	0 ~ 200 m ³ (1단계)	500	
	201 ~ 300 m ³ (2단계)	700	
	301 ~ 500 m ³ (3단계)	850	
	501 m ³ 이상 (4단계)	1,100	
전 용 공업용	계약m ³ 당	250	
	초과m ³ 당	381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때 초과 m³당 요금임.

【별표 3】 (조례 제30조 관련)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	구분	내역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점으로 면적이 10㎡미만의 복덕방, 인정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 · 고아원, 영아원, 양노원, 탁아소, 원호단체, 사회복지시설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업무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중 해당업체) · 사설소화전 · 정미소(농산물 가공) · 관공서, 병원, 군부대,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 (사회단체 등록 된 공익단체) · 어린이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 재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및 지사무소(단위조합 포함) ·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에서 급수하는 것 · 사용량×최종단계요금
영업용		· 식품점객업, 공연장, 유키장(게임방, 전화방, PC방), 노래방, · 숙박업(여인숙 제외) · 백화점, 도매업, 대규모소매점 (창고업 포함) · 자동차정비업소,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식유류 판매업 제외) · 문송 또는 관광업(여행사 포함), 음식점 · 사설학원 (교습소 제외) · 사진현상소, 사진관(촬영만하는 업소 제외) ·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투자신탁, 사설신용금고) · 양조업,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식품제조가공업, 의약품, 화장품제조업, 사료제조업, (가축·가공,도살업포함) · 체육시설(체육도장, 탁구장제외) · 공사를 목적으로 시공중인 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축물로 입주전까지)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가설 건축물) · 문반급수 · 별도급수전에 의한 선박의 급수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 법령(의료법, 안마사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의 안마시술소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 전당포 제외 · 최종단계요금 적용 · 최종단계요금 적용 · 최종단계요금 적용 · 욕탕2종 적용 제외
욕탕1용		· 일반 대중탕
욕탕2용		· 특수목욕장업 ·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
전용공업용		·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 설치한 전용관에 의한 급수

[별표 4] (조례 제35조 관련)

구 경 별 정 액 요 금

구경별	요 금	비 고	구경별	요 금	비 고
13m/m	760		150m/m	142,090	
20m/m	2,130		200m/m	201,820	
25m/m	3,420		250m/m	272,220	
32m/m	6,090		300m/m	328,290	
40m/m	10,280		350m/m	413,240	
50m/m	15,770		400m/m	449,730	
80m/m	43,880		500m/m	534,680	
100 m/m	65,210		500 m/m이상	850,000	

※ 구경별정액요금은 매 전당요금(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별 정액요금)

[별표 5] (조례 제40조 관련)

제 수 수 료

1. 제6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설계 수수료는 공사비의 2%로 하되, 15,000원 이상으로 한다.
2. 제13조제1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15,000원
3. 제13조제1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 설계금액의 100분의 2
4. 제33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구경 32m/m까지 14,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21,000원
 단, 수도미터기 시험 수수료가 변동될 시에는
 시험 실시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5. 제44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까지 20,000원
 급수관구경 50m/m이상 50,000원

【별표 6】 (조례 제48조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조례 제48조 제1항 제1호	조례 제48조 제1항 제2호	조례 제48조 제1항 제3호	
1급 수 도 용	·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 부정급수천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 을 받지 아 니한 급수공사 (신설에 한함)	·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200,000원	·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부정급수천거명령 ·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작동 방 해·훼손, 무단 천거 및 망실	·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설치명령 ·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때문 공 작물 설치 및 봉인 파손		50,000원		· 원상복구명령 · 봉인 파손. ·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5 허가 를 받지 아니 한 특수가압시설		200,000원	200,000원	· 천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 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		100,000원		·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종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0원		·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8 제22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 금지위반	· 판매금액의 5배	5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치 않은시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9 업종위반				· 업종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추정·업종 직권 변경 · 추정금은 납부기간내 납부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1개의 행위가 조례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처분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위에 정한 기준 중 그 벌이 중한 쪽 적용

※ 위반내용 제2호 부정급수자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무단급수공사 구경별 최대 출수량을 적용한다 단 생활용수의 1일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농업용수등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작기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별표 2] (조례 제29조 관련)

상 수 도 요 금 표

업 종 별 사 용 요 금 (단위 : m³)

업 종 별	단 계 별	개정안요금	수정안요금	비 고
가정용	0 ~ 10 m³ (1단계)	250	240	
	11 ~ 20 m³ (2단계)	350	320	
	21 ~ 30 m³ (3단계)	450	390	
	31 ~ 40 m³ (4단계)	550	530	
	41 ~ 50 m³ (5단계)	650	640	
	51 m³ 이상 (6단계)	780	770	
업무용	0 ~ 20 m³ (1단계)	380	380	
	21 ~ 50 m³ (2단계)	430	430	
	51 ~ 100 m³ (3단계)	560	560	
	101 ~ 300 m³ (4단계)	650	650	
	301 m³ 이상 (5단계)	820	800	
영업용	0 ~ 30 m³ (1단계)	500	480	조례 제46조 제3항, 제47조, 제39조의 일시 급수의 경우 최고 요금 적용
	31 ~ 50 m³ (2단계)	620	620	
	51 ~ 100 m³ (3단계)	800	800	
	101 ~ 300 m³ (4단계)	980	950	
	301 m³ 이상 (5단계)	1,050	1,000	
욕탕용 1 종	0 ~ 200 m³ (1단계)	400	400	
	201 ~ 300 m³ (2단계)	500	500	
	301 ~ 500 m³ (3단계)	650	650	
	501 m³ 이상 (4단계)	900	900	
욕탕용 2 종	0 ~ 200 m³ (1단계)	500	500	
	201 ~ 300 m³ (2단계)	700	700	
	301 ~ 500 m³ (3단계)	850	850	
	501 m³ 이상 (4단계)	1,100	1,100	
전 용 공업용	계약m³당	250	250	
	초과m³당	381	381	

※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때 추가m³당 요금임.